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주)○○○소속 프레스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전완부 절단, 2) 좌측상박골 개방성분쇄골절, 3) 우측수부압궤상, 4) 우측 제3수지중위지 골절단”이 발생한 경우

(91-517호 91. 10. 28. 취소)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안 ○ ○

주소 : 경남 남해군 남면

원처분 청 :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주식회사 ○○○

주 문

마산노동사무소장이 1991. 6. 27.자 “안○○”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5급 적용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안○○”(이하 “청구인”이라 한

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6. 27.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해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주)○○○ 소속 프레스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11. 29.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전완부 절단, 2) 좌측상박골 개방성분쇄골절, 3) 우측수부압궤상, 4) 우측 제3수지중위지 골부절단”으로 문화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4. 30.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애를 “한팔의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로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5급 2호를 적용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이 결정에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장해상태를 제5급으로 판정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가 장해등급 제5급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9. 9. 안○○)
2. 원처분청 의견서(1991. 9. 18.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5. 16. 안○○)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1. 5. 24.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8. 26.)
6.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주)○○○ 소속 프레스공으로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11. 29.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좌측전완부 절단, 2) 좌측상박골 개방성 분쇄골절, 3) 우측 수부압웨상, 4) 우측 제3수지 중위지골부 절단”으로 문화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4. 30. 치료 종결되었는 바 문화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은 “1) 좌측 전완부 절단, 2) 좌주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90도, 3) 우 제3수지 근위지골부 절단 및 제2수지 근위지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90도”이고, 원처분청 자문의의 장해소견은 “좌측 전박부 절단 및 우측 제3수지 기절골부에서 절단”인 바 이상의 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할때 좌측팔 결손 및 주관절 운동제한과 우 제3수지 결손 및 제2수지 운동제한이 각각 남아 있는 상태로써 좌측팔의 경우 전박부에서 절단된 상태이고 주관절 운동 제한이 있으나 팔의 결손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장애의 정도에 관계없이 결손 장해등급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장해등급 제5급 2호 “한팔의 손목관절 이상에서 상실한 자”에, 우 제2수지 근위지관절 운동제한이 있으나 이는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이고 우 제3수지는 근위지골부에서 절단되어 장해등급 제11급 6호 “한손의 가운데 손가락을 상실한 자”에 각각 해당되는 바 원처분청은 서열문란을 이유로 조정을 아니하였으나 한팔의 결손장해와 다른팔 수지의 결손장해가 함께 남아 있는 경우 각기 등급을 정하고 이를 조정하여 등급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건의 경우 좌측팔 및 우수 제3지 상실장해를 조정하여 “제4급”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장해등급 제5급 2호 적용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바르고 고운 말 생활속의 우리 말



○○중공업(주)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시지 심부좌멸창 및 부분 절단창”이 발생한 경우

(91-546호 91. 10. 28. 기각)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김 ○ ○

주소 : 마산시 회원구 합성구

원처분 청구인 :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재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중공업 주식회사

주 문

이건 재심사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마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5. 25.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애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청구인은 ○○중공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10. 31.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시지 심부 좌멸창 및 부분 절단창”으로 근로복지공사 창원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 4. 18.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애가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경미한 장해라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한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우제2수지 원위부의 피부결손으로 인해 지골의 일부를 절단한 후 수술을 시행한 상태이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애가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10. 8. 김○○)
2. 답변서(1991. 10. 14. 원처분청)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4. 26. 김○○)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1. 5. 25. 원처분청)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7. 18.)
6. 진단서사본(1991. 4. 24. 근로복지공사 창원병원)
7. 소견서 사본(1991. 5. . 원처분청 자문의)
8.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중공업(주) 소속 전기설비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10. 3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우측 시지 심부 좌멸창 및 부분 절단창”으로 근로복지공사 창원병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 4. 18. 치료 종결되었는 바 창원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우수 제2지중수지관절 운동범위 신전 0도, 굴곡 75도, 근위지관절 운동범위 신

전 10도, 굴곡 90도, 원위지 관절 운동범위 신전 5도, 굴곡 30도, 우수 제3지 관절 운동제한”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우측 시지 및 중지 운동 장해는 있으나 거의 정상임”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우, 우수 제2, 3지에 각각 기능장해가 남아 있으나 장해등급 기준표상 “손가락 폐용”이라 함은 중수지관절 또는 근위지관절 또는 운동 가능영역이 1/2이상 제한된 경우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라 함은 원위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3/4이상 제한된 경우를 각각 의미하는 것인 바 제2지의 경우 중수지관절 및 근위지관절의 운동범위 75~80

도는 생리적 운동영역 90~100도의 1/2미만 제한되고 원위지관절의 운동범위 20도는 생리적 운동 영역 70도의 3/4미만 제한되어 각각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뿐 제3수지의 경우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는 경미한 장해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피부결손으로 인한 지골의 일부결손을 주장하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라 함은 말절골이 일부 절단되거나 유리골편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한 피부결손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원처분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

상당
보건

원고를 모집합니다!

본 회보는 회원 여러분의 대변지로서 지면을 통해 그 말은바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하고자 합니다.

본 회의 회원을 비롯 산업보건에 관심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본 회보에 많은 투고와 성원을 기다리며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 합니다.

원고내용

- 산업보건사업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언
- 산업보건에 관한 학술논문 및 조사연구보고
- 현장사례
- 산업보건 관련자료
- 시, 수필, 꿩트 등

보낼곳

우편번호 137-06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3동 1022-1번지

대한산업보건협회 편집실

제재된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제재 여부는 본지의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